

第 57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5. 12. 4. ~ 12. 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務部)會員委員會庶務部 函 第 一 號

本 會 籌 備 會 務 報 告

(1954.4.15 - 1954.8.15)

會員委員會庶務部

목 차

1995 • 12 • 통권 제45호

I.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	3
II.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
III.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3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12월 4일(월요일) 15시 03분

開會式順(第5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교육감 인사
5. 폐식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5시 03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 회 사

(15시 04분)

● 의장 박재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김영세 신임교육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57회-개회식]

더욱이 신임 교육감께서는 제1대와 2대에 걸쳐 본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 회의를 주재하시며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맡아 주셨던 분이시기에, 저희 교육위원 일동이 향후 교육감께서 이끌어 갈 충북 교육의 발전에 거는 기대는 매우 지대합니다.

외람되으나 솔직하게 말씀드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다소 구시대의 잔재인 권위주의로 경직되고 획일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듣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통제되고 획일화된 교육과 폐쇄된 행정으로는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양성과 창조성이 존중되는 경쟁력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의 다양한 교육, 열린 교육행정으로 변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적 비전을 가지시고 충북교육계에 교육개혁의 새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라고 교육위원 일동은 확신하면서, 아울러 본 교육위원회가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역량이 탁월하신 교육감님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뜻깊게 개최되는 금번 회기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 관한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고,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는 바, 직속기관 방문을 통하여는 그 기능과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박재현.

● 의사과장 강인형

다음은 금일 본도 제9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김영세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교 육 감 인 사

(15시 08분)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 교육위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150만 도민을 대변한 이 교육민의 의 전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고장 교육발전과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힘써왔던 지나간 시간들이 만감을 교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법률의 공포로 국민적 열망과 교육가족들의 기대속에 교육자치시대가 개막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우리의 학교현장은 기대했던 변화와 개혁을 도출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는 출발때부터 잘못된 법적, 제도적 미비와 모순점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은 초대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내고장 교육의정 활동에 참여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아쉬움과 교육자치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치 못하였기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교육자치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의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발전은 교육담당자와 수요자들이 조화롭게 그 역량을 하나로 집결할 때 훌륭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치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불초 김영세에게 본도 교육감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우리고장 보통교육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이끌어 내며,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례에 본도 교육의 정책방향과 기본적인 시책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입니다.

학교단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대 심화하고, 6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다양화·전문화·지역화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통한 전인교육에 각별히 힘써 갈 것입니다.

학생교육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책임진다는 인식아래 학교장과 그 구성원들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환경과 그 여건의 개선입니다.

교실은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학생과 선생님의 창조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실의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고 탐구와 창의로 가득찬 수업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실개혁, 교육환경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약하고 앞서가는 충북교육의 실체는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자치, 교육개혁의 활기차고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교육자치의 기본적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하고

[제57회-개회식]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화시키겠습니다.

5.31. 교육개혁계획이 행정기관과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이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미래사회의 유능한 주역, 당당한 우리 고장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가겠습니다.

넷째, 인성교육, 과학기술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수월성 교육에 힘써 가겠습니다.

신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은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성의 상실, 그리고 인간소외와 같은 정신문화의 황폐속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능력있는 인간을 길러주고, 열린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문화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며, 개성과 창의력, 그리고 잠재능력의 개발은 열린교육 풍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화교육을 통한 능력신장과 수월성교육은 인재육성의 큰 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아직도 우리 충북교육 곳곳에는 풀어가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교육내용, 행정과 학사업무를 비롯한 많은 사업들이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충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동안 멋진 타래를 풀어주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서 교육풍토를 쇄신함으로써 충북 교육발전의 대단원을 기필코 구축하겠습니다.

열린 귀, 열린 가슴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할 것이며,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 단결된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이끌어 내며, 본인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과 책임에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늘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소중한 인연을 활짝 꽃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사과장 강인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5시 16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12월 4일(월요일) 15시 16분

議事日程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3. 기타안건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강인형)
2.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16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11월 25일 이경윤위원의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고 제95-12호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위원 결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7회-제1차]

'95년 11월 21일 제56회 임시회에서 김영세위원님이 본도 제9대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같은 달 25일 위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시고,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동일자로 그 사직을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위원 1명이 꺾어진 상태로 꺾원사항에 대하여는 '95년 11월 3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의회장에게 각각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95년 11월 25일 이경윤교육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19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이경윤위원 외 3인의 교

육위원이 발의하신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학생종합야영장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방문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0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윤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하신 의안으로, 대표위원이신 이경윤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경윤 위원**

이경윤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대통령령 제 14543호로 '95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도교육청의 일반직 모든 과장직급이 '95년 12월 1일 현재 상향조정된 직급인 지방4급으로 이미 승진발령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합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요람인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집행청과 교육위원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가교역할뿐 아니라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역할까지 담당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국·과장 직급은 상향조정되지 않아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금번에 지방교육자치의 균형 발전과 교육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해 의사국의 국·과장 직급을 도교육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교육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국내 하부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하고 의사과장의 직급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밑에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을 두고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국에서는 사무직원정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과 관련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있는 제32회 및 제33회 전국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각시·도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위원 모두가 개정안에 대해 잘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25분)

[제57회-제1차]

● 의장 박재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일환,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조일환,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운.

○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12월 8일(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강인형)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

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57회-제2차]

<p>먼저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질의의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p> <p>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p> <p>그러면 본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시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p>	<p>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기타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p> <p>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1시 05분 폐회)</p>
--	--

○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57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5.12.4-12.8(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5.12.4(월) 14:00 15: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5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 : 1995.12.4-12.8(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3. 기타안건 처리 [제1차 본회의 산회]	
12. 5(화) -12. 7(목)	<input type="checkbox"/> 교육행정기관 방문 -12. 5(화) : 교육연구원, 학생종합야영장 -12. 6(수) :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12. 7(목) : 단재교육원, 과학교육원	본회의 휴회
12. 8(금) 11:00	<input type="checkbox"/>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2.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별 첨 2)

의안번호	제 57 - 1 호
의결 년 월 일	1995. . .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 경 윤 교육위원 외 3인
발의년월일	1995. 1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 1
----------	--------

발의년월일 : 1995. 11. 25.

발 의 자 : 이경운 교육위원 외 3인

□ 제안사유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개정(1995.2.28. 대통령령 제14543호)으로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과장 직급을 도교육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 교육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국내 하부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
-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을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제4항).
-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안 제4조).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법률 제4951호, 1995. 7. 26.)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현행)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과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중 "14명"을 "15명"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표(제4조 관련)

직 급 별	정 수	비 고
합 계	15	
○ 일반 직 계	8	
지방부이사관	1	
지방서기관	1	
지방교육행정사무관	1	
지방교육행정주사	3	
지방교육행정주사보	2	
○ 별 정 직 계	1	
5 급 상 당	1	
○ 기 능 직 계	6	
지방사무보조원 8등급 (속기요원)	2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2	
지방운전원 10등급	2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13조-제20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제2조(직무) : (생략)</p> <p>제3조(조직)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u>지방서기관</u> 으로 보한다.</p> <p>② (생략)</p> <p>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은 <u>지방교육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p> <p>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u>의사국장 민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u>을 두되, <u>의안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 상당</u> <u>비정직 지방공무원</u> 으로 보한다.</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u>14명</u> 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 (생략)</p>	<p>제1조 - 제2조(직무) : (현행과 같음)</p> <p>제3조(조직) ① ----- <u>지방부이사관</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지방서기관</u> -----.</p> <p>④ ----- <u>의사과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되,</u> <u>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관으로,</u> <u>의안계장은 5급상당비정직 지방공무원</u> 으로 보한다.</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 <u>15명</u> ----- -----.</p> <p>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신·구대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비교증감
합 계		14	15	1
일 반 직	계	7	8	1
	지방부이사관	.	1	1
	지방서기관	1	1	
	지방교육행정사무관	2	1	△1
	지방교육행정주사	2	3	1
	지방교육행정주사보	2	2	
별 정 직	계	1	1	
	5급 상당	1	1	
기 능 직	계	6	6	
	지방사무보조원 8등급 (속기요원)	2	2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2	2	
	지방운전원 10등급	2	2	

㉓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 (1992. 7. 31)
조례 제 1996호

개정 1994. 3. 11 조례 제2118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조 (조직)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1994. 3. 11 본항개정)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1994. 3. 11 본항개정)

제 4 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직원의 파견 요청)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1992. 7. 31.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11.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표

직 급 별	정 수	비 고
합 계	14	
○ 일반 직 계	7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 정 직 계	1	
5 급 상 당	1	
○ 기 능 직 계	6	
지방사무보조원8등급 (속 기 요 원)	2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2	
지방운전원 10등급	2	

